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13 선고 2023가합4014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영, 임상준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재

변론 종결2024. 10. 25.

판결 선고2024. 12. 13.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1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1. 5. 1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743,112,11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C는 D에게 제2항의 채권양도계약이 743,112,11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피고 B에 대한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

○ 피고 C에 대한 청구

선택적으로,

피고 C는 2021. 5. 14.자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피고 B로부터 양도받은 별지1 기재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D(개명전 이름: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또는 피고들 사이에 별지1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1. 5. 1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D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4. 11. 18.자 대여에 관한 차용증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11. 18. 대여 받은 것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DOCUMENT: 이 사건 차용증(이미지 생략)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토지매매계약, D에 대한 대여 및 피고 B의 2014. 11. 27.자 약정서

1) 원고는 2012. 8. 10.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63,24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300m²를 원고의 아들 G와 공동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및 진입로 개설비용으로 85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10. 29. 위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3. 7. 9. 수원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피고 B는 2014.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D(개명전 이름: E) 명의로 낙찰받은 다음 추가로 대출을 실행하여 위 매매대금과 그에 따른 손실금을 전부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자리에서 D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보증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3) 원고는 2014. 10. 1. D에게 입찰보증금 151,848,800원을 변제기를 2015. 2.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는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2014. 1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B는 2014. 11.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실행하는 대로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850,000,000원에 손실금액을 더하여 총 1,25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F 토지 계약에 관하여

손해금액: 매매대금 850,000,000원(원금) +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손실금액을 더한 금액 총 1,250,000,000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F J중앙회 K지부에 추가 대출을 받아 드릴 것입니다. 추가대출은 F 개발행위허가 득한 후에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입회확인자 D

원고 귀하

I 귀하

2014. 11. 27.

피고 B 날인

다. D의 채무인수 및 원고의 D에 대한 소송

1) 이 사건 토지는 2015. 12. 17.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59,939m² 및 L 임야 3,305m²로 분할되었고, 위 F 임야 59,939m²는 2016. 9. 9. M 임야 53,773m², N 임야 4,950m², O 임야 1,240m²로 분할되었다.

2) 원고는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4722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5. 25. 'D는 원고에게 151,84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용인시 처인구 M 임야 53,773㎡와 N 임야 4,950㎡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P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6. 29.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4) D는 2016. 7. 14. 위 경매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D가 원고에게 피고 B의 2014. 11. 27.자 약정금 1,250,000,000원 중 손실금 부분인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토지 중 1,070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해주면 피고 B의 2014. 11. 27.자 약정금 1,250,000,000원 중 850,000,000원 부분이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여 주었다. 이에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M과 N 임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5) D는 2016.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7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대신 현금으로 7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6) D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2016. 9. 6. Q에게, 2017. 1. 26. R에게 매매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7) D가 2016. 7. 14. 약정한 400,000,000원과 2016. 12. 9. 약정한 7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D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D의 이의로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1178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2018. 3. 31. 'D는 원고에게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형사합의금 수령, 강제경매신청 및 배당 등

1) D는 원고를 기망하여 2014. 10. 1. 151,848,800원을 교부받고 2016. 12. 1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게 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원고는 2019. 4. 21. D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150,000,000원을 받았다.

2) 원고는 Q, R를 상대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입찰보증금 151,848,800원 대여금 채권 및 지연이자, 2016. 7. 14.자 약정금 400,000,000원, 2016. 12. 9.자 약정금 70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30. 선고 2017가합404654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13458 판결), Q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S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1. 6. 22. 1,371,265,823원을 배당받았다.

3) 원고는 남은 D에 대한 채권 및 지연이자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T로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3. 2. 3. 배당금 158,563,814원을 지급받았고,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권자로 기재된 U에 대한 배당이의사건의 합의를 통하여 추가로 8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마.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1) 피고 B는 2021. 5. 14. 피고 C에게 D가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한 대금 중 은행 대출금을 공제한 1,604,000,000원 중 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로 인정한 피고 B의 지분(60%)에 해당하는 962,400,000원의 채권(별지1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 피고 C는 2021. 7. 7. 962,4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D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고, 원고가 신청한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T 부동산강제경매에서 가압류권자인 피고 C에게 211,887,19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30621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24호증, 을 제3, 5, 13, 19, 20,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가 Q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와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에서 각 배당받은 돈을 D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먼저 충당 후 D와 피고 B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2014. 11. 27.자 약정금 관련 채무에 충당하면, 2023. 2. 3. 기준으로 피고 B의 2014. 11. 27.자 약정금 채무는 648,191,234원이 남는다.

나)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11. 18.자 대여금 50,000,000원과 2014. 11. 27.자 약정금 중 남은 648,191,2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2014. 11. 18.자 대여금 50,000,000원 중 25,000,000원과 2014. 11. 27.자 약정금 중 남은 648,191,234원 중 275,000,000원을 일부 청구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선택적 청구) 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원상회복청구

(1) 피고들은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소송신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014. 11. 18.자 대여금 채권 및 2014. 11. 27.자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B가 무자력이므로,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무효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원상회복으로 별지1 기재 채권을 D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D에게 통지할 것을 청구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청구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 B의 D에 대한 별지1 기재 채권이 사실상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별지1 기재 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피고 C에 대한 배당이 원고의 배당이의의 소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하여 수익자인 피고 C가 별지1 기재 채권을 아직 추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C가 D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청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2014. 11. 18.자 대여금 채무와 2014. 11. 27.자 약정금 채무는 모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2014. 11. 18.자 대여금 채무는 그 변제기인 2015. 4. 5.부터 5년 경과한 후, 2014. 11. 27.자 약정금 채무는 D가 이 사건 토지를 Q, R에게 매도하여 등기해 준 2017. 2. 13. 피고 B의 추가 대출 및 개발행위 허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각 채무는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2014. 11. 27.자 약정금 채무는 개발행위 허가 및 추가대출이라는 정지조건이 부가되어 있고, 위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으므로 2014. 11. 27.자 약정금 채무는 무효이다.

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14. 11. 27.자 약정금 채무는 D가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를 하거나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계계약으로 소멸하였다.

라) 2014. 11. 18.자 대여금 채권은 V와 원고의 분할채권으로 원고의 채권액은 25,000,000원이다.

마) 2014. 11. 27.자 약정금 채권은 원고와 I의 분할채권이고, 채무자는 피고 B와 D이며

분할채무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14. 11. 27.자 약정금 채권액은

312,500,000원이다. 원고가 형사합의금 및 강제경매를 통하여 이를 초과하는 돈을 변제받아 피고 B의 위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바) 2014. 11. 27.자 약정에는 이자 약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은 돈을 피고 B에 대한 관계에서는 전액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

사) 원고가 Q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에서 채권계산서에 Q 등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원리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였고, 위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원리금에는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및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의 지정에 의한 변제충당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강제경매에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판결금과 배당 시까지의 이자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도 모두 소멸하였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위와 같은 이유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자대위 및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

나) 피고 C는 2011. 4. 28. 피고 B에게 9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통정허위표시나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8.

45,000,000원을 변제기를 2015. 3.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후 변제기를 2015. 4. 5.로

변경하면서 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2014. 11. 18.자

대여'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2014. 11. 18.자 대여금 채권이 V와 원고의 분할채권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차용증에 원고와 V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V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V가 2014. 11. 18.자 대여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2015. 6. 22. 피고 B에게 2014. 11. 18.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가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 B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4. 11. 18. 대여 후 V가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4. 11. 18.자 대여의 채권자는 원고와 V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4.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총 1,2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2014. 11. 27.자 약정'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2014. 11. 27.자 약정의 채권자는 원고와 I이고, 채무자는 피고 B와 D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에 D는 입회인으로 이름을 기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2014. 11. 27.자 약정의 채무자에 D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약정서에 원고와 I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가 이 사건 약정서 작성 후 2015. 1. 15. 원고에게 1,2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②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가 받은 850,000,000원은 원고의 계좌나 원고의 남편인 W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③ 이 사건 약정서에 I이 원고와 함께 기재된 것은 I이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I이 이 사건 2014. 11. 27.자 약정 후 피고 B에게 채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④ D가 이 사건 2014. 11. 27.자 약정 중 850,000,000원과 관련하여 작성하여 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은

원고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014. 11. 27.자 약정의 채권자는 원고와 I이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2014. 11. 18.자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 사건 2014. 11. 27.자 약정금 1,250,000,000원에서 각 강제집행에 따른 배당으로 소멸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가 D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자금이 필요하여 2014. 11. 18. 돈을 빌린 것이며 2014. 11. 27.자 약정도 영업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여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2014. 11. 18.자 대여 및 2014. 11. 27.자 약정은 전체적으로 위 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2014. 11. 18.자 대여 및 2014. 11. 27.자 약정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 제기 전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2014. 11. 18.자 대여 및 2014. 11. 27.자 약정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2014. 11. 18.자 대여 및 2014. 11. 27.자 약정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3. 3. 1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들은 피고 B 명의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 피고들은 피고 B가 인허가를 받으면 정식 법인을 설립하려 했고 인허가 이전에는 피고 B를 대표로 한 가칭 X(주) 명의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참조),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 B가 이 사건 2014. 11. 18.자 대여 및 2014. 11. 27.자 약정을 한 것이 상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②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28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당시 부동산개발사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상인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설령 피고 B가 자신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4. 11. 18.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상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⑤ 나아가 이 사건 2014. 11. 18.자 대여 및 2014. 11. 27.자 약정에 관하여 상거래와 같은 정도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정지조건 미성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2014. 11. 27.자 약정은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과 금융기관의 추가대출을 정지조건으로 하는데,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2014. 11. 27.자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약정서에 'F J중앙회 K지부에 추가 대출을 받아 드릴 것입니다. 추가대출은 F 개발행위허가 득한 후에 실행토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과 금융기관의 추가대출이 이루어져야만 이 사건 2014. 11. 27.자 약정이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과 금융기관의 추가대출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2014. 11. 27.자 약정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내용은 피고 B가 이 사건 2014. 11. 27.자 약정의 이행 방법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2014. 11. 27.자 약정의 효력을 좌우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면책적 채무인수 내지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계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면책적으로 이 사건 2014. 11. 27.자 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채무자 변경의 경계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② 원고가 원고의 D에 대한 약정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1178호)에서 D가 원고에게 피고 B가 반환하기로 한 매매대금 850,000,000원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이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등기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에게 마쳐지면 피고 B의 850,000,000원 반환의무가 소멸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이전등기해 주겠다는 D의 약정 자체만으로 피고 B가 면책되는 면책적 채무인수 내지 채무자 변경의 경계계약의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③ 2016. 7. 14.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의 녹취록(을 제2, 12호증)에 의하면 D가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이제 없어지는 걸로 하고, 그런 거를 기입해 달라', '어차피 제가 다 가져오는 거니까 자동으로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2)에 "위 계약 내용은 피고 B에 대한 채무(850,000,000원)에 대한 변제 내용으로 계약 완료 후 등기 이전 후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위 D의 발언이 위 매매계약만으로 곧바로 피고 B의 채무가 소멸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2020. 11. 23.경에서야 피고 B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의 채무인수 당시 원고에게 피고 B를 면책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각 강제집행에 따른 배당으로 인하여 피고 B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변제된 금액은 민법 제479조의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채무가 원본채무보다 먼저 충당된다. 한편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지게 되어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에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그 다음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 그리고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어느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면 그 채무소멸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85281 판결 등 참조).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D의 형사합의금, 각 강제집행에 따른 배당 후 잔존하는 피고 B의 이 사건 2014. 11. 27.자 약정금 채무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4722호 확정판결에 의한 151,848,8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 채권'이라 한다), ㉡ 확정된 2018. 3. 31.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 채권'이라 한다)이다. 이중 ㉡ 채권 원본 부분은 D가 피고 B의 이 사건 2014. 11. 27.자 약정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다.

(2) 원고가 D로부터 2019. 4. 21. 형사합의금으로 150,000,000원을 받은 사실, D에 대한 위 채권들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S 강제경매에서 2021. 6. 22.

1,371,265,823원을 배당받은 사실, D에 대한 남은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T 강제경매에서 2023. 2. 3. 합계 238,563,814원1) 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돈들을 원고의 D에 대한 각 채권(㉠, ㉡)의 지연손해금, D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 채권 원본, D가 피고 B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 채권 원본 순으로 총당하면, 별지2 총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2020년이 윤년인 사실 반영).

(4) 별지2 총당액 계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 6. 22.자 1,371,265,823원 배당으로 ㉠ 채권의 원본 507,876,748원이, 2023. 2. 3.자 238,563,814원 배당으로 ㉡ 채권의 원본 94,750,866원이 각 소멸하였으므로, 위 각 배당으로 피고 B의 이 사건 2014. 11. 27.자 약정금 채무도 위 범위에서 각 소멸하였다.

(5) 결국 D의 형사합의금, 각 강제집행에 따른 배당 후 피고 B의 이 사건 2014. 11. 27.자 약정금 채무는 647,372,386원(= 1,250,000,000원 - 507,876,748원 - 94,750,866원)이 남는다.

다. 소결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2014. 11. 18.자 대여에 따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5. 4. 6.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민법 제397조) 채권과 이 사건 2014. 11. 27.자 약정금 중 변제충당 후 647,372,386원(이 사건 2014. 11. 27.자 약정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판단된다)이 남아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2014. 11. 18.자 대여금 중 25,000,000원과 이 사건 2014. 11. 27.자 약정금 중 275,00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합계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원고의 피보전채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1. 18.자 대여에 따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과 이 사건 2014. 11. 27.자 약정금 중 변제충당 후 남은 647,372,386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2023. 12. 20.자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피고 C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2021. 5. 14.경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Y에 대한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 채무, Z에 대한 530,000,000원의 채무, AA에 대한 200,000,000원의 근저당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으로 9억여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B 소유의 부동산들에는 다수의 압류 및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1 기재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공동담보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취소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D에게 제2항의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10. 25.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의 원리금은 이 사건 2014. 11. 18.자 대여에 따른 50,000,000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3,890,410원[$= 50,000,000\text{원} \times 5\% \times (9 + 203\text{일}2) / 365\text{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사건 2014. 11. 27.자 약정금 잔액 647,372,386원, 그중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 원고가 이행을 청구한 27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21,849,315원[$= 275,000,000\text{원} \times 5\% \times (1 + 215\text{일}3) / 365\text{일}$]], 합계 743,112,111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의 채권액인 743,112,11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참조).

원고의 배당이의의 소제기로 인하여 피고 C에 대한 배당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수익자인 피고 C가 양도받은 채권을 아직 추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C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D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743,112,11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다. 통정허위표시 내지 소송신탁 인정 여부

갑 제27호증의 기재, AB 주식회사에 대한 2023. 11. 24.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가 D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의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 C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② 피고 C는 2011. 4. 28. 920,000,000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가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여 많은 채무를 떠안게 되자 2021. 5. 14. 피고 C에게 D에 대한 별지1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피고 C가 2011. 4. 28. AB 주식회사로부터 9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피고 C의 위 대출금이 피고 B에게 대여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피고 C의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내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중 일부 기각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대위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송인권

판사김영일

판사이형철

별지

1) = 원고에게 인정된 배당금 158,563,814원 + U에 대한 배당이의사건의 합의를 통하여 추가로 배당받은 80,000,000원

2) 2015.4.6.부터 2024. 10. 25.까지

3)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3. 25.부터 2024. 10. 25.까지